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8

제출년월일 : 2015. 11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○ 상위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조례안 제2조

-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 추가

○ 조례안 제3조

- 인용근거 없는 인용조문(통합방위법 제5조제3항제5호) 삭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　　타 :

1) 입법예고(2015. 09. 23. ~ 2015. 10. 13.) 결과 : 제출의견 없음.

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 동의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26명”을 “3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제9호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한다.

제2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평창소방서장

제2조제2항제8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한다.

제2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강릉보훈지청장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5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”를 “협의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(이하"협의회"라 한다)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6명 이하로 구성하되,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	제2조(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 30명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②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.	② ---------- ---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3. 강릉보훈지청장
3. (생 략)	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<신 설>	5. 평창소방서장
4. (생 략)	6. (현행 제4호와 같음)
5. (생 략)	7. (현행 제5호와 같음)
6. ~ 8. (생 략)	8. ~ 10. (현행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)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3조(협의회 심의사항) 법 제5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	제3조(협의회 심의사항) 협의회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.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」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.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.

4. 작성자

작 성 자	자치행정과장 장 동 기
연 락 처	(033)330-2210

관계 법령

□ 통합방위법

제5조(지역 통합방위협의회) ① ~ ③ (생략)

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□ 통합방위법 시행령

제8조(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)

① 시·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·군·구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"지역협의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

1.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
2. 해당 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
3. 국가정보원의 관계자
4. 지방검찰청의 검사장·지청장 또는 검사
5.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
6.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
7.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
8.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
9. 지방병무관서의 장
10. 교육감 또는 교육장
11. 지방의회 의장
12. 지방소방관서의 장
13. 지역 재향군인회장
14.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

② ~ ⑦ (생략)